신구조문대비표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030호, 2019. 8. 6., 일부개정]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145호, 2019. 10. 22., 일부개정]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1. ~ 6. (생 략) 7.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 를 변경하는 것 8. · 9.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 <u>삭 제></u> 8. · 9. (현행과 같음)
	제14조(용도변경)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 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을 말한다. <u><단서 신설></u>	4
	<u>다만, 별표 1 제3호다목(목욕장만 해당한다)·라목, 같은 표제4호가목·사목·카목·파목(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만 해당한다)·더목·러목, 같은 표 제7호다목2) 및 같은 표 제16호가목·나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u>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15조(가설건축물) ① ~ ⑤ (생 략)	제15조(가설건축물)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u>아니한다</u> .	⑥
1. 제5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가설건축물을 축 조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48조, 제48조의2, 제49 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2조의3,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부터 제58조 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4조, 제67조 및 제68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76조를 적용하지 <u>아니한다</u> . 다만, 법 제48조, 제49조 및 제61조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경우에만 적용하지	1

<u>아니한다</u> .	
	<u>18 C - 1</u>
	<u>않는다</u> .
가.·나. (생 략)	가. · 나.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⑦ ~ ⑩ (생 략)	⑦ ~ ⑩ (현행과 같음)
제23조의2(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① 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날(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날 이후 정기점검과 같은 항목과 기준으로 제5항에 따른 수시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수시점검을 완료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제120조제6호에서 "기준일"이라 한다)부터 2년마다 한번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법」 제43조의3제2호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주기의 정기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이 조에서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u>확보하여야</u> 한다. <u><</u> 후단 신설>	제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 <u>설치해야</u> <u>이 경우 공개 공지는 필로티</u> 이 그고로 서기하 스 이디
1 0 ()] =[.	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확보할 때에는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한다. 이 경우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1. 삭 제 2. 공개공지등에는 물건을 쌓	③ 제1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설치할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조경시설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법제처

아 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파고라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 할 것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 따른 공개공지등의 설치대상이 아닌 건축물(「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것 외의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u>대</u> 지에 제2항 및 제3항에 적합한 공개 공지를 설치하는경우에는 제4항을 준용한다.	⑤
	대지에 법 제43조제4항, 이
⑥ (생략)	⑥ (현행과 같음)
제51조(거실의 채광 등) ① (생 략)	제51조(거실의 채광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u>건축물</u> 의 거 실(피난층의 거실은 제외한다)에는 <u>국토교통부령으로</u>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연설비(排煙設備)를 하여야 한	②
다.	<u>배연설비를 해야</u>
1. · 2. (생 략) ③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① (정 약) ④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11층 이하의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곳을 정하여 외부에서 주·야간 식별할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④ 제49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11층 이하의 층에는
<u>〈신 설〉</u>	1. 제4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대피공간 등을 설치한 아파트
<u><신 설></u>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라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한 아파트
제53조(경계벽 등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계벽 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u>설치하여야</u> 한다.	제53조(경계벽 등의 설치) ① <u>제49조제4항</u>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충간바닥(화장실의 바닥은 제외한다)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49조제4항

1. ~ 5. (생략)

- - - 설치해야 - -

1. ~ 5. (현행과 같음)

제56조(건축물의 내화구조)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제56조(건축물의 내화구조)** ① - - 제50조제1항 본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부 분만 해당한다)의 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단층의 부속 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렇지 않다.

1. ~ 5. (현행과 같음)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1. ~ 5. (생략)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지 아 ② 법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막구조의 건축물은 니하는 건축물로서 그 지붕틀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 에는 그 지붕틀을 내화구조로 아니할 수 있다.

제61조의3(건축물의 범죄예방) 법 제53조의2제2항에서 제61조의3(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다가구주 택.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2. 제1종 근린생 활시설 중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3. 제2종 근린 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4. 문화 및 집회시설(동· 식물원은 제외한다) 5.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 관은 제외한다) 6. 노유자시설 7. 수련시설 8. 업무시 설 중 오피스텔 9.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점검 및 조치)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 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2조의3제2항에 따른 점검 을 통하여 위법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 항에 따라 해당 건축관계자 및 제조업자 · 유통업자에 게 위법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해당 건축관계자 및 제조업자 · 유통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건축관계자에 대한 조치 가. 해당 건축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한 부분이 있는 경 우: 시공부분의 시정, 해당 공정에 대한 공사 중단 및 해당 건축자재의 사용 중단 명령 나. 해당 건축자재가 공사현장에 반입 및 보관되어 있는 경우: 해당 건축자 재의 사용 중단 명령 2.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에 대 한 조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법률에 따른 해당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요 청 ② 건축관계자 및 제조업자·유통업자는 제1항에 따라 위법 사실을 통보받거나 같은 항 제1호의 명령 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 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계획(제1항제1호가목의 명령에 따른 조치계획만 해당한다)에 따른 개선준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면 공사 중단 명령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61조의4(복합자재의 품질관리 등) ① 법 제52조의3 제61조의4(위법 사실의 점검업무 대행 전문기관) ① 법 제1항에 따른 복합자재(이하 "복합자재"라 한다)를 공급하는 자는 같은 항에 따른 복합자재품질관리서 (이하 "복합자재품질관리서"라 한다)를 공사시공자

제52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 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시공자는 제출받은 복합자 재품질관리서와 공급받은 제품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복합자재품질관리서를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4. 그 밖에 점검업무를 수행할수 있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②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복합자재품질 관리서를 공사감리완료보고서에 첨부하여 법 제25조 제5항에 따라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주는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 이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52조의3제4항에 따라 위법 사실의 점검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의 직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 설>

제62조(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① 법 제52조의4제1 항에서 "복합자재[불연재료인 양면 철판, 석재, 콘크 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 (心材)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를 포함한 제52조에 따 른 마감재료, 방화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 재"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 한다. 1. 법 제52조의4제1항에 따른 복합자재 2. 건 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로서 단열재 3. 제 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 및 을종 방화문 4. 그 밖에 방화와 관련된 건축자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 는 건축자재 ② 법 제52조의4제1항에 따른 건축자재 의 제조업자는 같은 항에 따른 품질관리서(이하 "품 질과리서"라 한다)를 건축자재 유통업자에게 제출해 야 하며, 건축자재 유통업자는 품질관리서와 건축자재 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여 품질관리서를 공사시공 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서 를 제출받은 공사시공자는 품질관리서와 건축자재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건축물에서 사용된 건축 자재 품질관리서 전체를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해야 한 다. ④ 공사감리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품질관 리서를 공사감리완료보고서에 첨부하여 법 제25조제 6항에 따라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건축주는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 이 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 설>

제63조(건축자재 성능 시험기관) 법 제52조의4제2항에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기관"이란 다음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로서 건축 관련 품질시험의 수행능력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해당하는 자 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

<신 설>

제63조의2(건축물의 범죄예방) 법 제5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다가구주 택,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2. 제1종 근린생 활시설 중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3. 제2종 근린 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4. 문화 및 집회시설(동· 식물원은 제외한다) 5.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 관은 제외한다) 6. 노유자시설 7. 수련시설 8. 업무시 설 중 오피스텔 9.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제111조(결합건축 대상지) ① 법 제77조의14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있는 2개의 대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충족하는 2개의 대지를 말한다.	
1. 2개의 대지 모두가 법 <u>제77조의14제1항</u> 각 호의 지역 중 동일한 지역에 속할 것	1 <u>제77조</u> <u>의15제1항</u>
2. (생 략) ② 법 <u>제77조의14제1항제4호</u>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2. (현행과 같음) ② 제77조의15제1항제4호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111조의2(건축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 허가권자는 법 제77조의15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공동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제110조의7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111조의3(결합건축 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77조의 1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u>의17제2항</u>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1. (생 략) 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현행과 같음) 2

법제처

- 6 -

가. · 나. (생략)

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1)1)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기 위하여 차량을 접안시키는 부 분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
- (2)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령」 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 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 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 한다)
- (3) ~ (0) (생략)
- (1)1)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기 위하여 차량을 접안시키는 부 분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
- (2)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u>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u> 령」 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 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 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 한다)
-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 3. 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 에 따른다.

가. ~ 타. (생략)

<신 설>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	-	_	_
_	-	-	_	-													
가. ·	니	(현	행고	구	같음)										
구							_		_	_	_	_	_	_	_	_	_

- (1)1)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기 위하여 차량을 접안시키는 부 분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
- (2)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령」 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 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 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 한다)
- (3) ~ (0) (현행과 같음)
- (1)1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2조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법률 제12516호 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의 처리시설로 한정한다)
- (2)12)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따라 직통계단 1개소를 갈음하여 건축물의 외부에 설 치하는 비상계단(같은 조에 따른 어린이집이 2011년 4월 6일 이전에 설치된 경우로서 기존 건축물에 비상 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 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პ.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															

가. ~ 타. (현행과 같음)

파.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따라 직통계단 1개소를 갈음하여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하 는 비상계단의 면적은 바닥면적(같은 조에 따른 어린 이집이 2011년 4월 6일 이전에 설치된 경우로서 기 존 건축물에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만 해당한 다)에 산입하지 않는다.

 4. ~ 10. (생략)
 4. ~ 10.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의2(「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법 제85조 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또는 「수질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건축물로서 주변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필일을 배출하는 건축물로서 주변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따른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건축물로서 주변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